

2002. 10. 16(수) 10:00
제92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

2001년도 세입 세출 결산 승인안
심사결과보고

예산결산특별위원회
위원장 박점용 의원

2001년도 세입 세출 결산 승인안 심사결과보고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

○ 제출일 : 2002. 7. 16

○ 제출자 : 거창군수

나. 회부일자 : 2002. 9. 3

다. 상정일자 : 제92회 거창군의회(제1차 정례회)
예산결산특별위원회(2002. 10. 14)

라. 의안번호 : 제 2002 - 29 호

2.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

가. 제안이유

○ 지방자치법 제125조 제1, 2항 및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8조 제1, 2, 3항에 의거 2000년도 세입·세출 결산승인을 요청함.

< 기타사항 >

- 2000년도 결산서
- 2000년도 결산서 부속서류
- 2000년도 결산검사 의견서

나. 주요골자

(1). 세입·세출 결산 총괄

(단위 : 천원)

회 계 별	예산현액	세입결산	세출결산	잔액(이월액)
합 계	200,647,887	204,686,708	146,834,852	57,851,856
일 반 회 계	182,046,469	186,261,994	133,506,908	52,755,086
특 별 회 계	18,601,418	18,424,714	13,327,944	5,096,770

(2). 세입결산

(단위 : 천원)

회 계 별	예산현액	징수결정액	수 납 액	과오납반환액	미수납액
합 계	200,647,887	206,584,678	204,686,708	468,966	1,897,970
일반회계	182,046,469	187,028,509	186,261,994	431,911	766,515
특별회계	18,601,418	19,556,169	18,424,714	37,055	1,131,455

(3). 세출결산

(단위 : 천원)

회 계 별	예 산 액	예산현액	지 출 액	다음연도 이월액	불용액
합 계	168,692,585	200,647,887	146,834,852	42,469,875	11,343,160
일반회계	150,410,404	182,046,469	133,506,908	41,469,620	7,069,941
특별회계	18,282,181	18,601,418	13,327,944	1,000,255	4,273,219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(전문위원 하준영)

- 2001 회계연도 세입세출의 결산은 지방자치법 제125조,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승인을 구하는 것으로서 의안처리 절차상 2002. 6월 정례회시 승인절차를 밟아야 하나 지방선거, 폭우 및 태풍 루사의 피해복구 등으로 이번 회기에서 처리하게 되었음
- 2002. 5. 1 ~ 5. 20(20일간)까지 의회에서 선임한 4명의 결산검사위원이 지방재정법, 재무회계규칙 등에 따라 검사를 실시한 결과 특이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고되었으며, 결산검사에서 나타난 주요시정 및 개선 조치사항 13개 항목에 대하여는 개선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며, 이외 기타 세부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항은 다음과 같음

< 일반회계 >

○ 일반회계 세입부분에서는

- 총세입은 예산현액 182,046,469천원 대비 102.7%인 187,028,509천원을 징수결정하고 이 중 186,261,994천원을 수납하여 99.6% 징수 실적이며, 전년도 수납액 146,799,920천원 대비 현년도는 127% 수납실적을 거둬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노

력한 점이 인정됨

- 그러나, 세입징수 결정액과 수납액은 늘어났으나 지방세 체납액이 5.9%로 체납액 일소 및 징수대책이 요구되고 있음
- 특히, 지방세 수입 중 지방세 과년도수입 비율이 43.2%로 체납세액이 부실 채권화될 우려가 높으므로 징수체계의 개선 및 채권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방안을 강구하는 등의 대책이 요망됨
- 세외수입의 미수납액은 168,195천원으로서 사유를 보면 공유재산 임대료, 도로사용료, 하수도사용료, 국유재산 매각수입, 과태료수입 등으로서 징수 활동 여하에 따라서 체납을 줄일 수 있는 요인이 많으므로 철저한 원인 분석을 실시하여 징수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
- 미수납액 처리에 관한 결손처분액도 145,159천원으로 이 중 과년도 체납액이 94.8%를 차지해 체납액 징수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겠음

○ 일반회계 세출부분에서는

-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하여 총 예산현액 182,046,469천원으로 이 중 지출이 133,506,908천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이 41,469,620천원, 불용액이 7,069,941천원으로 지출비율이 73.3%이며, 재정운용면에서는 사회개발 및 경제개발비에 투자 비중이 높아 지역개발 및 경기 부양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되고
 - 불용액 7,069,941천원은 전년도 불용액 5,810,467천원보다 21.6% 늘어났으나 예산현액 증가율 25.5%에 미달하므로 이는 예산집행잔액, 예산절감노력 등에 의하여 발생된 것으로 분석됨
 - 다만, 결산서 부속서류 45페이지 불용액 세출결산 총괄의 원인별 내역 중 계획 변경 취소 563,425천원, 집행사유 미발생 921,482천원은 계획의 변경 취소 확정 후 예산의 경정을 통해 용도를 재조정하여 유용하게 활용되도록 해야 함에도 이를 연도말까지 불용액으로 처리하게 된 사유를 내역별로 규명해 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검토됨
- 특히, 목별 10,000천원이상 미집행 부분이 있는 해당 부서는 그 사유설명이 필요하며 앞으로 예산의 편성 및 집행에 있어 보다 더 세심한 주의와 개선이 요망됨
-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4조(예산의 전용)에 의한 예산 전용을 5건 109,100천원을 사용하였으며 예산의 전용은 가급적 억제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며

< 특별회계 >

- 특별회계 세입부분에서는 7개 분야 19,556,169천원을 징수결정하여 18,424,714천원을 수납(수납률 94.2%)하였으며 미수납액 1,131,455천원은 농공단지조성사업·농업인소득 특별회계 등의 미수납금으로 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며, 특별회계는 일정한 급부의 제공에 의한 수익자의 비용의 부담임을 감안한다면 높은 수납률이라 볼 수 없으므로 향후 수납률 향상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이 요구되고 있음
- 특별회계 세출부분에서는 예산현액 18,601,418천원 대비 13,327,944천원(집행률 71.6%)을 지출하였으며 집행률을 보면 주택사업(100%), 의료보호기금(99.9%), 상수도사업(77%), 농공단지조성사업(75.7%), 주차장관리사업(9.7%), 농업인소득 지원기금(1.3%),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(1.2%) 등으로 극히 미진한 집행률을 보이고 있는 특별회계가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불용액 4,273,219천원도 예산현액 18,601,418천원의 23%에 이르고 있으므로 이는 예산의 편성이나 집행에 있어 더욱 신중한 대처가 요구된다고 사료되므로 사업집행률이 저조한 3개 특별 회계 관리부서의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함

4. 질의 및 답변

- 생략

5. 토론요지

- 생략

5. 審査結果 : 원안가결

- 2001 회계연도 세입세출의 결산은 지방자치법 제125조,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승인을 구하는 것으로서
- 2002. 5. 1~5. 20(20일간)까지 의회에서 선임한 4명의 결산검사위원이 지방재정법, 재무회계규칙 등에 따라 검사를 실시한 결과 특이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고되었으며, 결산검사에서 나타난 주요시정 및 개선 조치사항 13개 항목에 대하여는 개선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므로 집행부에 시정 촉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문하면서 군수가 요구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.